

통지번호CP49과세 연도2008통지 일자2010 년 3 월 2 일사회복지 보장 번호xxx-xx-xxxx(SSN)전화 1-800-xxx-xxxx페이지 1 / 2

01899954671 JOHN & MARY SMITH 123 N HARRIS ST HARVARD, TX 12345

귀하의 2008 년도 양식 1040A 에 대한 초과납부 금액이 귀하가 납부할 세액에 적용되었습니다.

예정 환불액: \$1,359.00

연방국세청은 귀하의 2008 년도(양식 1040A) 초과납부 금액 \$50 를 귀하의 2006 년도분 세액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1,359.00 를 환급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2008 년도 초과납부액	\$1,409.00
2006 년분 세금에 적용한 금액	-50.00
예정 환불액	\$1,359.00

##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

## 귀하의 환불액

귀하가 환불 수표 \$1,359.00를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
 연방국세청이 징수해야 할 여타 세금이나 미납액이 없다면 2~3주이내에 받게될 것입니다.

뒷 면에 계속...



John & Mary Smith 123 N Harris St Harvard, TX 12345

통지번호	CP49
통지 일자	2010 년 3 월 2 일
사회복지 보장 번호	XXX-XX-XXXX

귀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1-800-xxx-xxxx 번으로 전화하거나 www.irs.gov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 귀하가 서신을 동봉하였다면 여기를 체크하십시오. 모든 서신

[] 귀하가 서신을 동봉하였다면 여기를 체크하십시오. 모든 서신에는 사회복지 보장 번호 (xxx-xx-xxxx), 과세 연도 (2008) 및 양식 번호 (1040A)를 기입하십시오.

□ 오전 □ 오후 기본 전화번호 통화하기 가장 좋은 시간 보조 전화번호 통화하기 좋은 시간

INTERNAL REVENUE SERVICE KANSAS CITY, MO 64999-0025 s018999546711s

통지번호	CP49
과세 연도	2008
통지 일자	2009 년 3 월 2 일
사회복지 보장 번호	XXX-XX-XXXX
(SSN)	
페이지 2/2	

## 배우자의 채무로부터 보호

법률은 부부공동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귀하의 배우자(또는 예전의 배우자)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해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보고서와 관련된 초과 납부액의일부 또는 전부가 배우자의 과거 소득세나 기타 채무(자녀 양육비,배우자 양육비,학자금 대출) 상환에 적용될 경우, 귀하는 피해배우자로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자격이 있을 경우,그로 인하여 귀하가 납부할 세액을 변경하거나 또는 귀하의배우자의 부채에 적용된 초과납부액 중 귀하의 몫을 환급 받을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클레임을 제출하려면www.irs.gov 사이트를 방문하여 '피해 배우자 할당' (양식 8379)을다운로드 하거나 1-800-829-3676 번으로 전화하여 사본을요청하십시오.

참고: 귀하의 클레임은 연방국세청의 첫 번째 미상환 채무 회수 시도 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 참고 사이트: www.irs.gov/cp49.
- 세무 양식, 지침 또는 간행물이 필요할 경우 www.irs.gov를 방문하거나 1-800-TAX-FORM(1-800-829-3676)으로 전화하십시오.
- 이 통지서는 귀하의 기록서류로 보관하십시오.

연방국세청 은 이 통지서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에게 송부해야합니다. 각 통지서에는 귀하의 공동 계정에 관한 동일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환급은 한 번만 실시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방국세청으로 연락 주십시오.